

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6
- 나. 제안자 : 제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7
- 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5 (제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부담금의 부과대상

- 도심지역 -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이상
- 외곽지역 -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1,200㎡ 이상

*도심지역 : 제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상업(중심, 일반, 근린지역, 주거(전용, 일반, 준)) 지역, 공업(전용, 일반, 준) 지역

*외곽지역 : 도심지역 이외의 동지역

*시설물 :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, 사무실, 공장, 수상건물,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

○ 부과기준

- 도심지역 -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합계 × 350원 × 교통유발지수
- 외곽지역 -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합계 × 280원 × 교통유발지수

○ 부담금의 경감

별표1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표의 용도별 시설물로서
"통근버스운영"자동차 함께 타기(카풀제)운영, 유료주
차장, 승용차부제운영,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, 기타

○ 이행시기

- 금년 8월 1일부터 적용시행

3. 근거법령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6 ~ 15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,

나. 관련 자치법규인 제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등과도 연계 검토한바 상호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. 다만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2항에 의거 도심지역은 규정대로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1,000㎡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토록하고, 외곽지역은 동시 행령 제9조의 6 제3항에 이거 50/100이내에서 지역설정에 따라 시장이 적의 조정토록 규정되어 시에서는 20/100을 적용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,200㎡이상에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부담금도 도심 350원과 도심에 비하여 외곽은 20%낮은 280원으로 규정 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겠으며 여타 사항은 법령에 규정한 대로 적용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卷之三

6. 심사결과

원 안 가 절

7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1부.
 - 참고자료 1부.